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병주의원·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김병주·유용원·어기구
박용갑·허성무·김성희
김태선·이언주·황명선
김소희·이달희·강준현
김상훈·민병덕·김예지
김태호·유영하·김의겸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,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, 반도체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달리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·인력개발비

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하고, 그 우대공제를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,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반도체 분야”를 “반도체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인공지능”을 “인공지능, 방위산업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 중 “2029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·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“연구·인력개발비”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(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)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,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	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반도체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연구·인력개발비 중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	2. ----- -----

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(이하 “국가전략기술”이라 한다)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”라 한다)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

가. 나. (생략)

3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

-----인공지
능, 방위산업-----

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통합투자세액공제) ① ---

투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.

1. (생략)

2. 공제금액

가. 기본공제 금액: 해당 과
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
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
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
금액

1) (생략)

2)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

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”이라 한다)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·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”이라 한다)에 <u>2029년 12월 31일까지</u> 투자하는 경우[3)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 3)·4) (생략) 나. (생략) 3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2031년 12월 31일----- ----- ----- 3)·4) (현행과 같음) 나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